



http://www.iksan.es.kr

# 가 정 통 신 문

##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단계별 생활교육 접근 방법 안내

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 
바르게 자라서 나라의  
큰 일꾼이 되자

“전통적인 라다크 사회에는 사람들이 갈등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이른바 ‘자발적 중재자’ 라는 것이 있다.” (『오래된 미래』 중에서)

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. 크고 작은 갈등, 불편함이 있을 때 서로가 ‘자발적 중재자’가 되어 평화로운 사회를 이어가는 라다크 사회를 떠올려 봅시다.

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. 특히 **평화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 (놀림, 따돌림, 욕설, 폭언, 폭력, 사이버폭력 등)**으로 인해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.

학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며, 작은 사회로 평화로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‘**학교 규칙**’, ‘**학교생활규정**’입니다.

특정한 누군가에게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위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학부모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.

자녀가 학교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, 만약 학생들 간에 평화를 깨트리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단계. 담임교사 중심 생활교육 (★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평화로운 방식입니다.)

⇒ 쌍방 의견 듣기(상황과 맥락 파악), 적절한 생활지도(사과, 반성, 화해 조정 등), 필요시 보호자 연락, 필요시 보호자 간 소통 등으로 문제 해결

※ 담임선생님을 믿고 신뢰해주세요. 우리 모두는 상처되는 말보다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화하길 소망합니다.

### 2단계. 익산초 학교생활규정 -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(학교홈피-알림마당-공지사항-<학교생활규정> 참조)

⇒ 익산초 학교생활규정 제5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규정에 따라 사안조사, 징계 사항 심의,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, 재심 요구 가능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

- 징계의 종류: ① 학교 내 봉사, ② 사회봉사, ③ 특별교육이수, ④ 출석정지, ⑤ 훈계·훈육, 교실에서 분리조치, 상담교육, 특별과제 부여 등

※ 학생 간의 다툼과 폭력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접근하기 보다 **학교생활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아픔에 대한 공감과 치유, 진정성 있는 사과, 좋은 관계로 발전 등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되는 익산초 학교풍토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.**

### 3단계.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 (학교홈피-알림마당-공지사항-<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> 참조)

⇒ 『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: 사안조사, 진술, 심의 과정 등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상호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.

- 사안이 접수되면 **학교장 자체해결(학교)**, **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(교육청)**로 구분되며, 징계 의결시 **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. 재심 요구 가능**
- 징계에 대해 **가해자, 피해자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가 다수임**(가해자는 징계가 약하다, 피해자는 징계가 너무 세다). 따라서 **재심 요구 비율이 높음.**

※ **징벌적 생활교육보다 학생 간의 진정한 아픔에 대한 공감과 화해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.**

이는 한 개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침입니다.

우리 익산초는 모두를 위한 학교이며, 동시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학교입니다.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어른입니다. **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지지, 어른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주세요.** 또한 **익산초의 평화를 위해 ‘자발적 중재자’가 되어주세요.** 감사합니다.

2023. 5. 17.

익산초등학교장

<참조>

□ **익산초 학교생활규정 - 제5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** (학교홈피-알림마당-공지사항-<학교생활규정> 참조)

**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**  
**제40조(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 
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를 둔다.  
 ②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, 학생상담 업무담당자, 교무기획 업무담당자, 각학년 업무담당자,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,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.  
 ③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 ④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,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 
**제41조(징계원칙) 생략**  
**제42조(징계의 종류와 기간)**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 
 ① 학교 내 봉사: 7일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 
 ② 사회봉사: 3일 이내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 
 ③ 특별교육이수: 5일 이상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  
 ④ 출석정지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,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  
 ⑤ 훈계·훈육, 교실에서 분리조치, 상담교육,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.

□ **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 절차**

